



구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1892호 |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고 시

- 미추홀구 고시 제2026-140호 제일시장 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경미한변경) 승인 고시 2
- 미추홀구 고시 제2026-141호 동남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고시 7

공 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28호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8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31호 옥외광고물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1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3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3BL] 13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47호 주염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공고 44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54호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46

회 람

| 발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 편집: 미디어홍보실

고 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40호

제일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1-146호(2021. 10. 18.)로 승인된 제일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추진계획을 변경(경미한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9. 17.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경미한변경)

1. 시장정비사업의 명칭: 제일시장 정비사업 (변경없음)

2.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변경없음)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제일시장 시장정비구역	미추홀구 도화동 429-4번지 외 112필지	5,596.5	

3.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가. 성명: 제일시장 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기환)

나.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430-28번지

4.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일자: 변경승인 고시일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시설 현황

☐ 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	2	14	28~33	보조 간선	6,220	대1-1	광3-5	일반	-	
기정	소	3	2	6	보조 간선	102	대1-1	도화동 436	일반	-	
기정	소	3	①	6~7.5	보조 간선	55	대2-11	소3-3	일반	-	

☐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	2	14	28~33	보조 간선	6,220	대1-1	광3-5	일반	-	
기정	소	3	2	6	국지 도로	102	대1-1	도화동 436	일반	-	
기정	소	3	①	6~7.5	국지 도로	55	대2-11	소3-3	일반	-	

6.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이용계획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5,596.5	100.0	
주상복합용지		4,964.1	88.7	
기반시설	도로	632.4	11.3	

7. 사업계획(안)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건축 계획	건축면적(㎡)	3,058.83	3,070.11	증) 11.28
	용적률(%)	509.98	499.86	감) 10.12
	건폐율(%)	61.62	61.85	증) 0.23
	총연면적(㎡)	40,144.77	40,342.70	증) 197.93
	지상연면적(㎡)	25,315.70	24,813.56	감) 502.14
	층수	지하4층, 지상25층/ 77.25m 이하	지하4층, 지상25층/ 77.25m 이하	-
	주차대수	352대(장애인주차 11대 포함)	342대(장애인주차 11대 포함)	감) 10대
용도별 계획	계	40,144.77	40,342.70	증) 197.93
	공동주택(㎡)	31,546.33(78.58%)	32,311.90(80.09%)	증) 765.57
	판매시설(㎡)	8,598.44(21.42%)	8,030.80(19.91%)	감) 567.64

8. 건축물의 주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기정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연면적(㎡) (지상연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m)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제일시장 정비사업 구역	5,596.5	계	4,964.1	-	-	-	-	-	-
			획지1-1 (주상복합 용지)	4,964.1	41,000㎡이하 (지상:25,40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61.7% 이하	510% 이하	77.25m 이하	25층 이하

□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연면적(㎡) (지상연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m)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변경	제일시장 정비사업 구역	5,596.5	계	4,964.1	-	-	-	-	-	-
			획지1-1 (주상복합 용지)	4,964.1	41,000㎡이하 (지상:25,40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62% 이하	500% 이하	77.25m 이하	25층 이하

9. 입점상인 보호대책 (변경없음)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의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나. 관계서류 참조

10.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사유

- 가. 미추홀구 고시 제2021-146호(2021. 10. 18.)를 통해 시장정비사업 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일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축 용도별 계획의 면적 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음
- 나. 이에 따라, 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경미한 변경안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승인함

11. 관계서류 열람

- 가.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386)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12. 기 타

- 가.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입점상인 보호대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의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

1) 임시시장 개설 또는 금전적 손실보상

-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미추홀구청과 협의하여 임시시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 임시시장 개설 기간은 이주 개시일부터 정비사업 종료일(조합 청산일)까지로 하고, 임시시장 부지사용료(또는 대부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 임시시장의 마련이 어려운 경우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및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의 규정 준용.
- 다만, 폐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년간의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 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

2) 점포의 우선분양·임대료 할인·임대점포 마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시행자(조합)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동안에 입점상인(임차상인 포함)에게 점포의 우선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조합원과 동일한 분양가를 적용하여 분양.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이전 1년간 계속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직접 영업을 한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다만, 1세대 1주택만 해당)
-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입점상인의 임대분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임대점포에 대한 규모 및 공급기준을 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임대점포에 대한 임대료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후 상가의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하여, 임차상인에게 임대점포 공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41호

동남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57-47 외 17필지 일원 「동남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동남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57-47번지 일대 (외 17필지)

나. 면 적 : 4,039.5㎡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변경없음)

가. 착수 예정일 : 2027년 3월

나. 준공 예정일 : 2030년 2월

※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변경없음)

가. 명 칭 : 동남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110, 301호

5. 변경사항: 일부 조합 임원 및 대의원 변경

공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528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한 의무자에게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아 래 -

1. 처분내용 : 도로 무단점용 사설안내표지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제75조
3. 처분원인 : 도로구역 내 사설안내표지 무단점용
4. 처분대상

물건 소재지	소유자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비고
용현동 91 도로 (용현동 192-3 맞은편)	미 상	안내표지	1	

5. 공고기간 : 2026. 9. 15. ~ 9. 29.(14일 이상)
6.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무단 사설안내표지 현황(별첨)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바 해당 사설안내표지를 **2025. 9. 29.**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제4항에 의거하여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것을 알려드리며, 상기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032-880-4698)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1호

행정대집행 고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귀하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91(용현동 192-3 맞은편)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한 귀하의 소유 안내표지에 대하여 자진 정비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표지가 도로의 통행 및 미관에 지장을 주어 이를 방치할 경우,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9월 29일까지 반드시 자진 철거**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도로법 제73조, 제96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고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91 (용현동 192-3 맞은편)	안내표지	1 개	미추홀구청 자체 철거 집행 (필요시 제3자 대집행) (철거 및 도로 원상회복)

2026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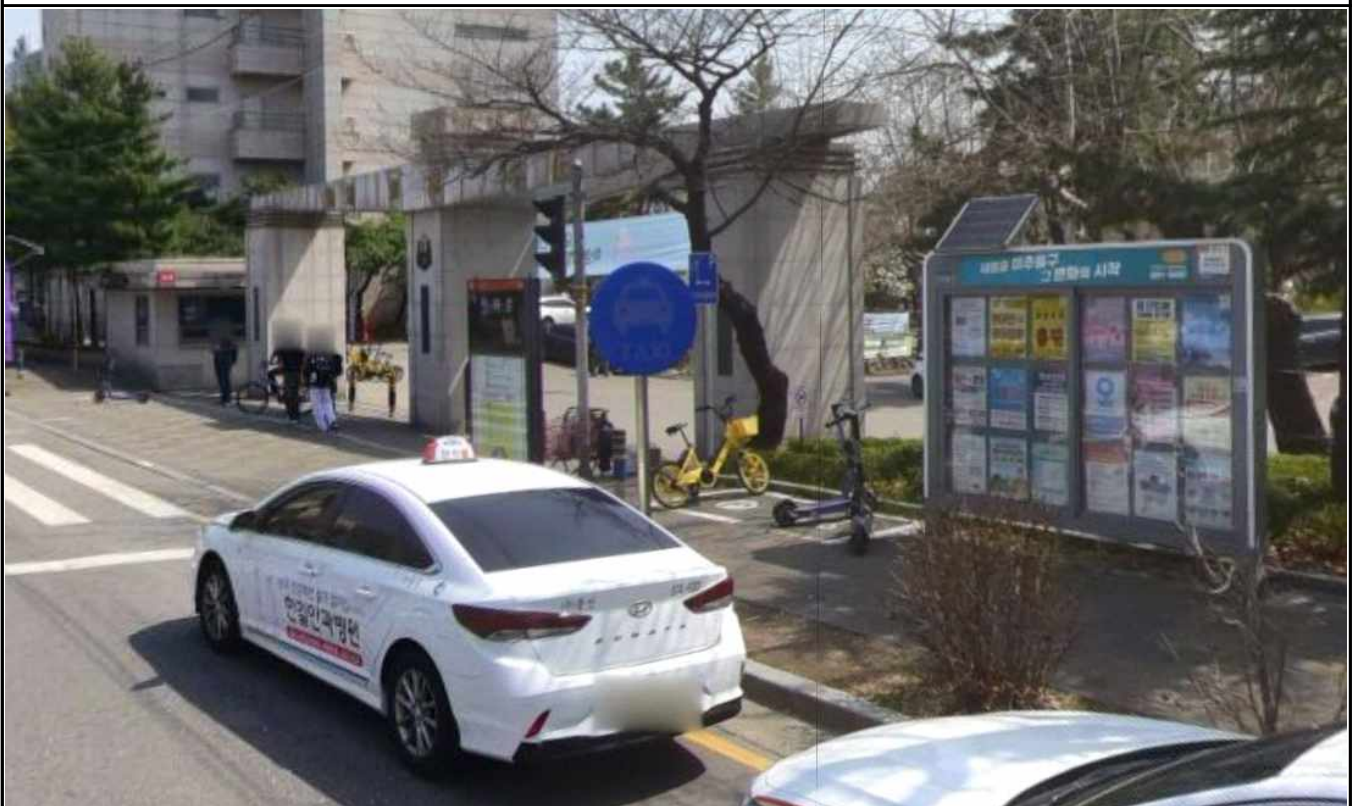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153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9.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제 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동법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 위반사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게시
-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및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시송달 대상자

처분 종류	성명	송달주소	과태료	반송사유	등기번호	위반내용
독촉	남*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하로17* 집*스 5층 6층 호 (주안동)	금145,880원	폐문부재	14417-0603 -818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7. 공시송달 내용

-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나.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가산금 규정에 따라 가산금이 가산되며, 체납된 과태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8.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 불법 유동광고물 담당(032-880-4986)

-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53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3BL』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9.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공 고 명: 건설공사(건축 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사개요

가. 사 업 명: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3BL(시티오씨엘 9단지)

나. 사업주체: 코리아신타(주)

다. 시 공 자: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 현대건설(주), (주)포스코이앤씨

라. 감 리 자: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앤지

마. 사업개요

1)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 3BL

2) 대지면적: 91,275.60㎡

3) 연 면 적: 332,891.28㎡

4) 규 모: 아파트 9개동 1,949세대(지하2층~지상49층), 부대·복리시설 등

5)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6) 공사기간: 2026. 10. 1. ~ 2030. 3. 31.

7) 공 사 비: 591,330,406,800원(부가세 포함)

8) 안전점검 비용: 314,297,324원(부가세 별도)

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2026. 4. 16.

3. 안전점검 개요(과업 내용)

가. 점검 종류

항목	점검시기	횟수
정기안전점검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9회 [9개동 각 1회]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9회 [9개동 각 1회]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9회 [9개동 각 1회]
초기점검	준공직전	1회
천공기 (높이 10m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3회 [3대 각 1회]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3회 [3대 각 1회]
항타 및 항발기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4회 [4대 각 1회]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4회 [4대 각 1회]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5회 [5대 각 1회]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26회 [5대 총 26회]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5회 [5대 각 1회]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9회 [9개동 각 1회]
	설치 말기단계시	9회 [9개동 각 1회]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9회 [9개동 각 1회]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9회 [9개동 각 1회]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1회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1회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	최초 설치 완료시	9회 [9개동 각 1회]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9회 [9개동 각 1회]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1회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1회
총계		136회

나. 점검시기: 현장 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 제출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2026년)에 등록된

업체 중 건축 분야 11개 업체

(단, 「건설기술 진흥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신청 불가함)

※ 2026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44호(2026. 1. 7.))

연번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 분야				비고
				교량 및 터널	수리 시설	항만	건축	
1	(주)한국주택검사	신정호	3798701643				○	
2	정원도시안전진단주식회사	문현주	4158118792	○	○		○	
3	주식회사합건설방재기술단	김민수	1398126059				○	
4	주식회사경인씨에스엔지니어링	박희주	1508603233				○	
5	주식회사링크이앤씨	변시연	1728800884				○	
6	주식회사민엔지니어링	지정민	8088101455				○	
7	주식회사삼우통상	황세훈	1318120463	○			○	
8	주식회사와이구조엔지니어링	이용호	1228634992				○	
9	주식회사한국건설기술사사무소	이승철	6198702079	○			○	
10	주식회사에스디구조	안영석	8958701183				○	
11	주식회사하이테크구조엔지니어링	박영석	6568102440				○	

나. 결정방법

1) 평가기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60점	평점=평가점수 X 60%
수행가격	40점	평점=평가점수 X 40%
합 계	100점	

2) 「미추홀구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합니다.

(단, 신청업체가 1개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고 신청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지정하여 수행함)

3)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4)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입니다.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9. 16.(수) ~ 2026. 9. 23.(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 접수(미추홀구청 3층 2층 주택관리과 공동주택팀)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 가격제안가 하한율: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가격제안 최저가: $314,297,324\text{원} \times 87.745\% = 275,780,186\text{원}$ (부가세 별도)

※ 수행가격이 안전점검비용을 초과하거나 제안가가 하한율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실격 처리)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서식 1]
- 4)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 현황 [서식 2]
- 5) 참여기술인 용역수행실적 현황 [서식3]
- 6)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현황 [서식 4]
- 7)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서식 5]
- 8)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인 자격정지 등 [서식 6]
- 9) 참여기술인 업무 중첩도 [서식 7]
- 10) 서약서 [서식 8]

6. 결과통보: 2026. 9. 30.(수) ※ 최종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2026. 10. 1.(목) 10:00~18:00까지

나. 장 소: 미추홀구청 3청사 2층 주택관리과 공동주택팀

다. 방 법

-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우편, 전자메일,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및 작성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라.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 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마.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체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 바. 신청서류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사.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 2) 담합이나 타인의 신청 참가를 방해 및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신청
-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하거나 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점 비용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차.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카.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공동주택팀

(☎032-880-4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추홀구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끝.

미추홀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 총 괄

가. 평가점수 : 100점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
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2. 배점기준

평가항목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60점	40점	30점
입찰가격	40점	60점	70점

3.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 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등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제출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다. 평가서에 포함된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라. 평가서 제출 이후 계약 시까지 평가대상 기술인이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마. 참여 수행기관 및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지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4. 수행능력 평가방법

가. 평가배점표

1) 기초금액이 1억원 이상인 정기안전점검 등

구분	세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평가				50															
	1-1. 책임기술인			30	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책임 기술인	등 급	건축분야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따라 해당분야의 자격요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특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한다.(미달시 실격)														
		경 력	년수	12	<table><tr><td>15년이상</td><td>15년미만 ~13년이상</td><td>13년미만 ~11년이상</td><td>11년미만 ~9년이상</td><td>9년미만</td></tr><tr><td>12</td><td>10.8</td><td>9.6</td><td>8.4</td><td>7.2</td></tr></table>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12	10.8	9.6	8.4	7.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12	10.8	9.6	8.4	7.2													
		실 적 (최근5년)	건수	9	<table><tr><td>10건이상</td><td>10건미만 ~9건이상</td><td>9건미만 ~8건이상</td><td>8건미만 ~7건이상</td><td>7건미만</td></tr><tr><td>9</td><td>8.1</td><td>7.2</td><td>6.3</td><td>5.4</td></tr></table>					10건이상	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9	8.1	7.2	6.3	5.4
					10건이상	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9	8.1	7.2	6.3	5.4												
금액	9		<table><tr><td>5억원이상</td><td>5억미만 ~4.2억이상</td><td>4.2억미만 ~3.6억이상</td><td>3.6억미만 ~3억이상</td><td>3억미만</td></tr><tr><td>9</td><td>8.1</td><td>7.2</td><td>6.3</td><td>5.4</td></tr></table>					5억원이상	5억미만 ~4.2억이상	4.2억미만 ~3.6억이상	3.6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9	8.1	7.2	6.3	5.4		
		5억원이상	5억미만 ~4.2억이상	4.2억미만 ~3.6억이상	3.6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9	8.1	7.2	6.3	5.4															

구분	세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1-2. 참여기술인			20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참여 기술인	등 급	건축분야	3	<table><tr><td>고급기술인 이상</td><td>중급기술인</td><td colspan="3">초급기술인</td></tr><tr><td>3</td><td>2.5</td><td colspan="3">2</td></tr></table>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3	2.5	2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3	2.5	2																													
		경 력	년수	7	<table><tr><td>10년이상</td><td>10년미만 ~9년이상</td><td>9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 ~7년이상</td><td>7년미만</td></tr><tr><td>7</td><td>6.3</td><td>5.6</td><td>4.9</td><td>4.2</td></tr></table>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	6.3	5.6	4.9	4.2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	6.3	5.6	4.9	4.2																													
실 적 (최근5년)	건수	5	<table><tr><td>10건이상</td><td>10건미만 ~9건이상</td><td>9건미만 ~8건이상</td><td>8건미만 ~7건이상</td><td>7건미만</td></tr><tr><td>5</td><td>4.5</td><td>4</td><td>3.5</td><td>3</td></tr></table>					10건이상	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	4.5	4	3.5	3																
			10건이상	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	4.5	4	3.5	3																												
금액	5	<table><tr><td>5억원이상</td><td>5억미만 ~4.2억이상</td><td>4.2억미만 ~3.6억이상</td><td>3.6억미만 ~3억이상</td><td>3억미만</td></tr><tr><td>5</td><td>4.5</td><td>4</td><td>3.5</td><td>3</td></tr></table>					5억원이상	5억미만 ~4.2억이상	4.2억미만 ~3.6억이상	3.6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5	4.5	4	3.5	3																	
		5억원이상	5억미만 ~4.2억이상	4.2억미만 ~3.6억이상	3.6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5	4.5	4	3.5	3																													
2.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30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정밀안전점검, 공사재개전 안전점검		건수	15	<table><tr><td>10건이상</td><td>10건미만 ~9건이상</td><td>9건미만 ~8건이상</td><td>8건미만 ~7건이상</td><td>7건미만</td></tr><tr><td>15</td><td>13.5</td><td>12</td><td>10.5</td><td>9</td></tr></table>					10건이상	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15	13.5	12	10.5	9														
			10건이상	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15	13.5	12	10.5	9																													
	금액	15	<table><tr><td>5억이상</td><td>5억미만 ~4.2억이상</td><td>4.2억미만 ~3.6억이상</td><td>3.6억미만 ~3억이상</td><td>3억미만</td></tr><tr><td>15</td><td>13.5</td><td>12</td><td>10.5</td><td>9</td></tr></table>					5억이상	5억미만 ~4.2억이상	4.2억미만 ~3.6억이상	3.6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15	13.5	12	10.5	9																
5억이상	5억미만 ~4.2억이상	4.2억미만 ~3.6억이상	3.6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15	13.5	12	10.5	9																													
3. 신용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절대평가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수행기관	절대평가	3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이하: 0.2점)																												
		참여기술인	절대평가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인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이하: 0.2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 급	절대평가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table><tr><td>회 사 채</td><td>A-이상</td><td>A-미만 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 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어음</td><td>A2-이상</td><td>A2-미만 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신용</td><td>A-이상</td><td>A-미만 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점 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0</td></tr></table>						회 사 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회 사 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4. 업무중첩도				10																													

구분	세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6	● 지정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건 이하	2건	3건	4건 이상
				6.0	5.4	4.8	4.2
	참여기술인	절대평가	4	● 지정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건 이하	2건	3건	4건 이상
				4.0	3.6	3.2	2.8

2) 기초금액이 1억원 미만인 정기안전점검 등

구분	세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평가			50	

구분	세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1-1. 책임기술인			30	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책임 기술인	등 급	건축분야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따라 해당분야의 자격요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특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한다.(미달시 실격)				
		경 력	년수	1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12	10.8	9.6	8.4	7.2
		실 적 (최근5년)	건수	9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9				8.1	7.2	6.3	5.4	
	금액	9	3억원이상	3억미만 ~2.4억이상	2.4억미만 ~1.8억이상	1.8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9	8.1	7.2	6.3	5.4		
	1-2. 참여기술인			20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참여 기술인	등 급	건축분야	3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3	2.5	2		
		경 력	년수	7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					6.3	5.6	4.9	4.2	
실 적 (최근5년)	건수	5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	4.5	4	3.5	3		
금액	5	3억원이상	3억미만 ~2.4억이상	2.4억미만 ~1.8억이상	1.8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5	4.5	4	3.5	3			
2.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30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정밀안전점검, 공사재개전 안전점검	건수	15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5	15	13.5	12	10.5	9		
		금액	15	3억원이상	3억미만 ~2.4억이상	2.4억미만 ~1.8억이상	1.8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15	15	13.5	12	10.5	9		
3. 신용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절대평가	4	● 참여 수행기관이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시 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 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구분	세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수행기관	절대평가	3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이하: 0.2점)					
		참여기술인	절대평가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이하: 0.2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평가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4. 업무중첩도				10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6	6	● 지정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건 이하	2건	3건	4건 이상		
					6.0	5.4	4.8	4.2		
	참여기술인	절대평가	4	4	● 지정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건 이하					2건	3건	4건 이상			
4.0					3.6	3.2	2.8			

나. 수행가격평가

평 가 항 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제안가격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98점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96점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94점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92점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90점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88점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86점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 84점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 82점	
총계	100	평가점수 × 40%(1억원 이상일 경우) 평가점수 × 60%(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일 경우) 평가점수 × 70%(5천만원 미만일 경우)	

* 수행가격 평가기준은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나-3-가) 에 따름

5.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 (1) 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5]의 자격요건(기술인격 요건, 해당분야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해당 전문분야의 특급기술인이어야 한다.
- (2)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의 등급이 없을 경우 초급으로 평가한다.
- (3)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는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시

① 경력기간 100%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중 건축구조, 건축시공 전문분야

② 경력기간 60%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중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설계 전문분야

- (4)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 시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참여기간 중 인정일(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건수 및 금액)

- (1)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대상으로 한다.
- (2) 참여기술인의 정기안전점검 등 용역수행 실적은 최소 60일 이상 참여한 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용역의 착수일이 지정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수행한 해당 용역 중 준공된 실적 또는 진행 중인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실적을 평가한다.
- (3) 참여기술인의 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로 평가한다.

(가) 발주자가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발주청)인 경우

: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기재)

(나)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ex. 민간 건설사)

: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용역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계약내역서,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 가능한 부분만 제출), 세금계산서

3) 참여기술인 평가 기타사항

- (1)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위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겸임이 불가하며, 위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3)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세부평가방법

- 1) 수행기관의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대상으로 한다.
- 2) 수행기관의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용역의 착수일이 지정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수행한 해당 용역 중 준공된 실적 또는 진행중인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3) 수행기관의 용역수행실적 건수 및 금액 등은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로 평가한다.
 - (1) 발주자가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발주청)인 경우

: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기재)
 -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ex. 민간 건설사)

: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용역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계약내역서,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 가능한 부분만 제출), 세금계산서

다. 신용도 세부평가방법

1) 점검·진단 실시결과와 평가결과

- (1) 점검·진단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의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말한다.
- (2) 점검·진단 평가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 (3) 참여 수행기관은 별지양식에 따라 점검·진단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2)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 (1) 수행기관의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영업)정지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발급한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2) 참여기술인의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는 ‘(1)’ 항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

-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지정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 점으로 처리한다.
- (5) 지정공고일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0” 점으로 처리한다.

라. 업무중첩도 세부평가방법

- 1)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이 지정 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재 용역 수행중인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2) 업무중첩도 평가 대상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공

고일 기준으로 용역 잔여기간이 90일 이상인 건을 대상으로 한다(용역잔여기간이 90일 미만인 안전점검의 경우 중첩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

- 3) 업무중첩도는 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축분야만 적용한다.
- 4) 제출된 중첩도 현황을 확인한 결과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기술인 업무중첩도 항목은 “0” 점으로 처리한다.

마. 가격평가기준

1) 평가방법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평균가격 110만원) C기관 100점, A기관 98점, B기관 98점, D기관 96

점

- (2) 수행가격평가의 배점 기준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1순위(100점)부터 후순위로 갈수록 2점씩 감점하여 산정한다.

-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외)

-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2) 가격제안서 제출

- (1) 가격제안서는 [별지서식 2]에 따라 작성하고, A4 규격봉투에 밀봉하여 수행능력평가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6. 평가서 작성요령

가. 평가서는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출양식을 참조하여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제출서류

- 1)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별지서식 1]
- 2) 가격제안서 1부[별지서식 2]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규격 및 수량

- 1) 크기 : A4용지
- 2) 제본 : 상철
- 3) 제출부수 :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본순서

- 1) 표지[별지서식 3]
- 2)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사본[별지서식 1]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총괄)[서식 1]
- 4) 참여기술인 현황[서식 2]
- 5) 참여기술인 용역수행실적[서식 3]
- 6) 책임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 7)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 8) 수행기관 용역사업 수행실적[서식 4]
- 9) 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 10)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서식 5]
- 11)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인격정지 등[서식 6]
- 12)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인격정지 등 확인서
- 1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4)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서식 7]
- 15) 서약서[서식 8]

라.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사본은 하단여백에 수행기관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별지서식 1]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출하지 않고 제출한다.

바. 기타사항

- 1)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3)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 4) 모든 자료 작성일은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5) 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6)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12항에 따른다.

[별지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직무분야	건축분야 [] 종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별지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별지서식3] 증빙서류)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수수료 없음
----------------------	---	-----------

[별지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 업 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신청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3]

접수번호	
------	--

원본, 부분 구분 표기

사업명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체명(대표자)	(주)OO엔지니어링(대표자 : OOO)
전화번호	02-0000-0000
FAX번호	02-0000-0000
담당자(전화번호)	OOO 부장 (02-0000-0000, 010-0000-0000)

[서식 1]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총괄)

구 분				배 점	자기평가점수	평점	비 고
총 계				100			
1.참여기술인	소 계			50			
	책 임 기 술 인	계		30			
		등 급		-			
		경 력		12			
		실 적	건 수	9			
			금 액	9			
	참 여 기술인	계		20			
		등 급		3			
		경 력		7			
		실 적	건 수	5			
			금 액	5			
2.용역수행실적	소 계			30			
	건 수			15			
	금 액			15			
3.신용도	소 계			10			
	점감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4			
	입찰참가제한, 업무(영업)정지			3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3			
4.업무중첩도	소 계			10			
	책임기술인			6			
	참여기술인			4			

※ 참여수행기관에서 “자기평가점수” 작성, “평점”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작성

[서식 2]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 현황

1. 자격 및 경력 현황

구 분	성 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 급	자격증 종 류	직무분야 (전문분야)	경 력	비고
사업 책임기술인		00.00.00				년 월 (총 일)	특급기술인 자격취득일 (00.00.00)
분야별 책임기술인		00.00.00				년 월 (총 일)	

※ 책임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며 특급기술인으로 한정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서식 3]

참여기술인 용역수행실적 현황

1. 책임기술인의 용역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건설공사 종류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발주자	환산건수		비고 (담당업무)
							건수	금액	
1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건축물	100	18.01.01~19.11.30 (1년 11월)	OO공사	1	100	책임기술인
2	OO건설공사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리모델링	50	18.07.01~18.10.31 (4월)	(주)OO건설	0.3	15	참여 기술인
합계							건	백만원	

2. 참여기술인의 용역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건설공사 종류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발주자	환산건수		비고 (담당업무)
							건수	금액	
1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건축물	100	18.01.01~19.11.30 (1년 11월)	OO공사	1	100	책임기술인
2	OO건설공사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리모델링	50	18.07.01~18.10.31 (4월)	(주)OO건설	0.3	15	참여 기술인
합계							건	백만원	

※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인별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4]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현황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건설공사 종류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발주자	환산건수		비고
							건수	금액	
1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건축물	100	18.01.01~19.11.30 (1년 11월)	OO공사	1	100	
2	OO건설공사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리모델링	50	18.07.01~18.10.31 (4월)	(주)OO건설	0.3	15	
합계							건	백만원	

※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수행기관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5]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연번	용역명	처분기관	처분일자	처분내용	감점현황	비고
			00.00.00	시정	-0.3	
				부실	-0.7	
합계					-1.0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또는‘부실’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시정’처분은 0.3점 감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받은 경우 기재한다.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서식 6]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인 자격정지 등

1. 수행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연번	처분종류	처분기관	처분기간	감점현황	비고
	입찰참가제한	000	19.07.01~19.12.31 (6개월)	-1.2	
	영업정지				
합계				-1.2	

2. 참여기술인의 자격정지 현황

연번	처분종류	처분기관	처분기간	감점현황	비고
	자격정지	000	19.07.01~19.12.31 (6개월)	-1.2	
합계				-1.2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예산회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인격법」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기술인격정지, 징계처분 등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기간은 “ ~ (○월)”로 기재한다.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서식 7]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용역구분	발주자	용역비 (백만원)	참여업무	참여 기간	
책 임 기술인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인		
			정밀안전점검			참여기술인		
	합계	건						
참 여 기술인								
	합계	건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참여 중인 모든 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모두 기재

[서식 8]

서 약 서

□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47호

「주엽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261호(2026. 9. 14.)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한 주엽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같은 법 제56조와 시행령 제4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안)을 주민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공람기간: 2026. 9. 21.(월) ~ 2026. 10. 5.(월) (초일불산입 14일간)

2. 공람장소: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3. 공람요지

가. 사업의 명칭: 주엽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시행구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8-5번지 일원

다. 시행면적: 17,297.9㎡

라. 시행기간: 2024년 ~ 2027년

마.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4.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 관계 도서 (공람 장소에 비치)

사업명	위 치	규 모
주민공동 이용시설	주안동 18-121(도시정원) 주안동 18-143(주차장)	218.6㎡ 213.5㎡
기반시설 정비	사업구역 내	- 도로정비(MMA 등), 하수악취차단장치 설치 - 쉼터형, 화단형 담장개선 - CCTV, 비상벨 설치 및 성능개선 등

* 공람 내용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계획 관계 서류는 공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554호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이 접수되어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사실을 양수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까지
3. 공고대상

차량번호	양도인 (원고)	양수인(피고)		비고
		성명	주 소	
인천85아7721 →97주1232	(주)남*물류	유*대	경기도 의왕시 부곡초등1길 13, **	인천지방법원 2026가단138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

4. 공고내용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제5호 및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차 소유권을 강제이전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수인(피고)께서는 영업용번호판 반납 및 자가용등록판 수령, 자동차 정기검사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반 법규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880-4548)

202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